

보도자료1  
(요약본)

이 자료는 2024년 1월 23일(화) 15:00 보도부터  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

2024. 1. 23.

기획재정부

## 목 차

I.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	1
II. 주요 개정 내용	2
1. 경제활력 제고	2
1) 투자 · 고용 · 소비 촉진	2
2) 기업경쟁력 제고	5
2. 민생경제 회복	8
1)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지원	8
2) 서민 · 중산층 부담 경감	10
3. 미래 대비	11
1) 출산 · 양육 지원	11
2)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	12
3) 지역균형 발전	13
4.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	14
1) 납세자 권리 보호	14
2)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	16
III. 추진 일정	18

## I.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

### < 기본 방향 >

- ◇ '23년 국회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
- ◇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

### 1. 경제 활력 제고

-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
-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·종부세 증과배제
-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
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
-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
-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

### 2. 민생 안정

- 자영업자의 고용·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
-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
-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
-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

### 3. 미래 대비

-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
-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
-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
-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 구체화

### 4.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-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
-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
-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
-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

## 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1 경제 활력 제고

#### 1) 투자·고용·소비 촉진

##### 국가전략기술\* 범위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)에서 발표

\* 일반 R&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(중소 40~50%, 중견·대기업 30~40%) 적용

##### ○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\*

\* (반도체)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(확대: HBM(고대역폭메모리) 등 추가)  
(디스플레이) OLED 화소 형성·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(신설)  
(수소) ①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, ②수소환원제철, ③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(신설)

##### 신성장·원천기술\* 범위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)에서 발표

\* 일반 R&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(중소 30~40%, 중견·대기업 20~30%) 적용

##### ○ 방위산업 분야 신설\*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\*\*

\* (현행) 지능정보·로봇·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→ (개정안) 방위산업 분야 추가  
\*\* 추진체계 기술(가스터빈엔진 등), 군사위성체계 기술, 유무인복합체계 기술

##### ○ 탄소중립(원자력 등)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&D 지원 강화

분야	세부 기술 (신 규)
에너지·환경 (3개)	대형원전 제조기술,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, 폐섬유 화학·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
로봇(1개)	Non-coding 교시기술 * 별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기술
첨단 소부장 (5개)	고효율·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,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, 고순도 리튬화합물을 제조기술, 니켈 회수공정 기술,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
탄소중립(3개)	암모니아 발전 기술,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,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

## 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(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### < 법률(조특법§25의6) 개정내용 >

- ◇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② 추가공제 신설
  - \* ① (종전) 대 3% / 중견 7% / 중소 10% → (개정) 대 5% / 중견 10% / 중소 15%
  - ②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% / 중소 15% 공제율 추가 적용
  - 추가공제 세부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-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(투자·고용 등),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정량지표\* 중 4개 이상 충족\*\* 시 추가공제 적용
  - \* 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% 이상
  - ②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% 이상
  - ③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% 이상
  - ④ 후반제작비용(편집, 그래픽, 자막 등)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% 이상
  - ⑤ 주요 IP(방송권, 전송권, 배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) 3개 이상 보유
- \*\* ① 요건을 충족하고 ②, ③, ④, ⑤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

## □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·종부세 증과배제 (소득령·종부령)

※ 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」(24.1.10.)에서 발표

-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(24.1.10~'25.12.31) 취득한 ① 소형 신축주택(아파트 제외) 및 ②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·종부세 증과배제
  - \* ① 전용면적 60㎡ 이하,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·지방 3억원 이하, 준공시점 24.1.10~'25.12.31 등
  - ② 전용면적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

### < 양도세 증과제도 >

구 분	세율(%)	
	'21.6~'22.5	'22.5~'24.5 (한시배제)
1주택	기본세율 (장특공제 적용)	1주택 0.5~2.7
2주택	기본세율+20% (장특공제 배제)	2주택 0.5~1.0
3주택 이상	기본세율+30% (장특공제 배제)	3주택 이상 2.0~5.0

### < 종부세 증과제도 >

구 분	세율(%)
1주택	0.5~2.7
2주택	0.5~1.0
3주택 이상	2.0~5.0

## □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(소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과\*를 배제하는 기한을 '24.5.9.에서 '25.5.9.까지로 1년 연장
  - \* 증과세율: (2주택) 기본세율+20%p, (3주택 이상) 기본세율+30%p

## 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·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\* 적용
  - \*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% 감면(10년간)

## □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(소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(월 300→500만원)

## □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\* 대상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\*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
-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확대\*
  - \* (현 행) 관광호텔업  
(개정안)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 등 7개)

## □ 수소제조용 석유가스(LPG)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(개소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(기본세율의 △30%\*) 적용(24.4.1. 이후)
  - \* (프로판) 20→14원/kg, (부탄) 275→176.4원/kg

## 2) 기업경쟁력 제고

### □ 가업상속공제 · 가업승계 중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(상증령 · 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중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→대분류 내로 완화

### □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적용대상 (조특령)

※ 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23.7.4.)에서 발표

#### < 법률(조특법§104의33) 개정내용 >

- ◇ 국내건설기업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(대여금 채권잔액의 최대 100%) 특례 신설  
↳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, 대여금등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해외건설자회사 요건) 국내건설모회사가 90%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
- (대여금등 범위)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,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

### □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\* 확대 (법인령)

\* (현행)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100%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 손금 인정

- 국내 모회사가 100%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

### □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\*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 (법인령)

\* 연결법인 간 국내 소재하는 유무형자산 등 양도 시 양도순익 과세이연

-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

### □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\* 합산배제(비과세) (총부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\*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는 일부 지분(10~25%) 취득 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분할취득

-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(비과세)

### □ 기술혁신형 M&A 세액공제\* 공제대상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\*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%(경영권 인수 시 30%)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% 세액공제
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\* 상향

\* (현 행) Max[특허권 등 평가금액, {양도가액 - (순자산시가×130%)}]

(개정안) Max[특허권 등 평가금액, {양도가액 - (순자산시가×120%)}]

### 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(소득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(연 500→700만원)하되,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

##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\* 보완 (법인령)

- \* 공사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되나, 양도한 토지 일부는 일시에 익금산입
-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

##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(농특령)

- 전공대학\*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\*\*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

\*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
\*\*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「도시재생법」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

## 특정외국법인\*(CFC)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(국조령)

\* CFC(Controlled Foreign Company): 거주자·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있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으로 간주 과세

-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 완화\*

\* (현 행)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·배당소득  $\div$  지주회사 전체소득  $\geq 90\%$   
(개정안) 이자·배당소득에 이자·배당소득의 예·적금이자까지 포함

## 러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 부담 해소(소특령·법인령)

-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(23.8.8)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확대\*

\* (현 행) 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·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 
(개정안)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
## 2 민생경제 회복

### 1)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#### 자영업자의 고용·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(소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·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

####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(조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\*를 추가

\* (현 행) 폐업, 사망, 대표자자위 상실, 노령청구  
(개정안) 자연재난, 사회재난, 6월 이상의 입원치료, 회생결정·파산선고 추가

#### 재기증소기업인 특례\* 적용대상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(매출 15억원 미만)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·매각 유예,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(최대 3년)

- 특례 적용 재기증소기업인의 범위에 '소상공인 재도전특별 자금을 용자받은 자'를 추가\*

\* (현 행) 중진공·기보·신보의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,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
(개정안)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용자받은 자 추가

####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(부가령)

-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
##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\* 대상 업종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\*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%(청년 5년간 90%) 근로소득세 감면(연 200만원 한도)

-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

##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\* 대환 요건 완화 (소득령)

\* 무주택·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, 고정금리·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~2,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
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\*

\* (현행)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

## 자원봉사용역 기부금세액공제 인정가액 현실화 (소득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(1일 5→8만원)

## 2)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

### 토지임대부 주택\*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(부가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\* 시행사(SH, LH 등)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

-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(국민주택 규모 이하)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### 양식업 소득 비과세\* 한도 상향 (소득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」(23.11.30.)에서 발표

\*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,000만원까지 비과세

#### < 법률(소득법§12) 개정내용 >

- ◇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리,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

-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,000→5,000만원으로 상향

###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\* 한도 상향 (조특령)

\* (현행) 어로어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조합원 1인당 1,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

-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,200→3,000만원으로 상향

###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)

-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후환급 대상 농·임업용 기자재 확대\*

\* (축산업용 기자재)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

(농·임업용 기자재) 다겹보온커튼,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,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

### 3 미래 대비

#### 1) 출산·양육 지원

##### □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\* 대상 확대 (소득형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\*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의 15%(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: 20%, 난임시술비: 30%)를 세액공제
-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

##### □ 출산·양육 지원금의 손금·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(소득형·법인형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·양육 지원금을 지급\*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
- \* 단,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

##### □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(소득형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출산·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

##### □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\* 요건 완화 (개소형)

\*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(300만원 한도)

- 자녀가 취학·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

##### □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(소득형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·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\*로 비과세

\*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, 「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」,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의 상한액과 동일

#### 2)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
##### □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 확대 (조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\*

\* (현행)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퇴직·폐업, 입원치료, 첫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

##### □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(조특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장병내일준비적금\*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(6→1개월)하여 전상·공상 사유 보충역\*\*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

\*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(24년부터 매칭률 82 → 100%로 상향) 혜택 부여

\*\* 부모, 배우자, 형제 가운데 전사, 순직, 전상·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

##### □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특공제\* 요건 완화 (소득형)

\*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,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(연간 한도 200만원)

-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(기준시가 9→12억원) 상향

### 3) 지역균형 발전

####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 (조특령, 상증령)

※ 「지방시대 비전과 전략」(23.9.14.)에서 발표

< 법률(조특법 §121의33 등) 개정내용 >

- ◇ **기회발전특구 내 창업**(사업장 신설 포함)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\* 신설
  - \*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소득·법인세 감면
- ◇ **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\* 신설**
  - \*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
- ◇ **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\* 신설**
  - \*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 9% 분리과세
- ◇ **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**
  - ⇒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,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,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
- (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)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, 정보통신업,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
- (대체취득 대상 부동산)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본사, 공장, 기업부설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
- (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) 특구 내 ①부동산 사용권, ②부동산 개발사업, ③사회기반시설사업, ④입주기업의 채권·주식\*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,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을 60% 이상으로 규정
  - \* 중소·중견기업이 특구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로 한정
- (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)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

####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\* 대상 업종 확대 (조특령)

\*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소득·법인세 감면

-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\*

\* (현행) 식료품·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,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(개정안) 모든 식료품·음료 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

###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#### 1) 납세자 권리 보호

#####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\* 범위 확대 (국기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\*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
-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(3,000→5,000만원 미만)

##### 국선대리인\* 선정 신청 자격 확대 (국기령)

\*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(과세전적부심·이의신청·심사청구·조세심판)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

-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\*에게도 확대·허용
  - \*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,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

#####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(국정령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24.1.4.)에서 발표

-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\*하여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
  - \* (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) 185→250만원, (사망보험금) 1,000→1,500만원, (보장성보험 해약·만기환급금) 150→250만원

##### 이월결손금 공제한도\* 적용제외 대상 추가 (법인령)

\*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(중소기업등은 100%) 범위에서 공제 가능

-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의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(학교·사회복지법인 등)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

##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\*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(소특령 · 법인령)

- \* 농수산물 중·시장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 부과
- 농수산물 중·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(‘23→‘26년) 및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

과세기간(사업연도)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(%)

구 분		‘19	‘20~‘21	‘22~‘23	‘24(안)	‘25(안)	‘26(안)
증도매인	서울	85	90		95		
	서울 외	65	70	75	80	85	
시장도매인(법인)		85	90		95		

##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(관세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‘23.7.27.)에서 발표

### < 법률(관세법 §246의2) 개정내용 >

- ◇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
  -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
- (보상 대상) 포장용기, 운반·운송수단 추가
- (보상액) 수리비 또는 손실자의 청구액(구매가격 한도)으로 설정

## 2)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

###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(법인령)

-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운행경비·감가상각비 손금 인정(‘24.1.1. 이후 적용)

###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\* 대상소득 명확화 (조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‘23.7.27.)에서 발표

- \* 축산업·임업 소득,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% 감면
-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·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화

###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(법인령)

#### < 법률(법인법§12) 개정내용 >

- ◇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
- 유상감자차익\*,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
  - \*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

###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(관세령)

-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(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)을 출국금지·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

\* (현행)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,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, 명단이 공개된 고액·상습체납자 등

##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\* 확대 (소특령)

※ 「2023년 세법개정안」(23.7.27.)에서 발표

- \*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필요
-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\*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(125→138개 업종)하고, 1개 업종\*\*을 정정
  - \* 여행사업, 앰뷸런스서비스업, 수영장운영업 등
  - \*\*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

##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\* 확대 (소특령)

- \*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,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·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
- 2개 업종(애완동물 장묘·보호서비스업, 유사의료업) 추가(199→201개 업종)

## III. 추진 일정

### 1 개정대상 시행령 : 총 21개

#### 내국세(17개)

-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상속세 및 증여세법·종합부동산세법·부가가치세법·개별소비세법·주세법·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·교육세법·인지세법·농어촌특별세법·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·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
-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
#### 관세(4개)

- 관세법·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,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

### 2 추진 일정

- '24.1.23.(화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'24.1.25.(목) ~ 2.14.(수), 입법예고
- '24.2.27.(화), 국무회의
- '24.2월 말, 공포